



소통하는 의정  
공감받는 의회

제3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 
(제1차 교육위원회)  
2019. 4. 22. (월) 10:00

# 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안

교육위원회  
수석전문위원 이충환

## 충청북도 유치원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조례안

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서 동 학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○ 발의일자: 2019년 4월 9일

○ 회부일자: 2019년 4월 11일

3. 제정이유

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「유아교육법」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·선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.

4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(안 제1조 및 제2조)

나. 조례의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(안 제3조)

다. 유아 모집·선발 계획에 관한 사항(안 제4조)

라. 유아모집 선발인원에 관한 사항(안 제5조)

마. 선발요강에 관한 사항(안 제6조)

바. 유아모집·선발 방법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
## 5. 검토의견

- 매년 유치원 유아모집 시 학부모의 국·공립유치원 및 특정유치원 선호에 따른 쏠림현상과 과열경쟁 발생, 유치원 유아모집의 투명성과 공정성 문제, 사립유치원의 정부지원금·보조금 사용의 투명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올바른 유아교육 실현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주요사항으로 지적되어 왔음.
- 이에 본 제정 조례안은 「유아교육법」 제11조에서 위임한 유치원의 유아모집·선발 시기,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, 유아모집과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·보완하여 충북 도내 유아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보장하고 유치원 교육현장의 혼란과 갈등, 학부모의 불만을 해소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.
-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에 적용범위를 충북도내 공·사립유치원으로 명시하고 안 제4조에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통한 유아 모집·선발 방법, 시기, 절차 등을 포함한 유아 모집·선발계획을 교육감이 매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규정한 것은 공·사립유치원 모두에게 균등한 방식으로 유아 모집·선발을 체계적이고 공개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판단됨.
- 안 제5조에 유치원별 유아 선발 인원을 교육감이 인가한 정원의 범위에서 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, 안 제6조에 유아 선발요강을 사전에 공개하도록 한 것은 유아모집 시 유아 선발 인원 에 따른 유치원 현장에서의 혼란을 줄이고 학부모의 불편과 불안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됨.
- 안 제7조에 유아 모집·선발을 유아교육법 제19조의2에 따른 유아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등 공개적인 방법으로 하도록 한 것은 유아 모집·선발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며 안정적인 시스템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- 본 조례 제정안은 전체적인 조문 구성과 내용에 있어서 상위법령에 위반 사항이 없고, 「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」을 준수하고 있으며, 공정성과 투명성을 갖춘 유아 모집·선발을 체계화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  
- 다만 그동안 정부 및 도교육청의 유아 모집·선발과 유치원 운영에 관한 정책에 대해 사립유치원과의 협의과정에서 극심한 갈등과 많은 논쟁이 있었던 만큼 공·사립유치원이 상생하며 우리사회 유아교육에 함께 기여하며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실행과 사후관리를 위한 세심한 준비와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